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 9.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으로 신규 매입 및 기타(기부채납) 2건 9,216㎡ 317,661천원, 건물 기타(기부채납) 1건 98㎡ 35,075천원 입니다.

가. 토지 취득

① 기타(기부채납) : 최현숙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 진부면 하진부리 947번지 외 4필지 3,851㎡ 91,608천원(공시지가)

② 매입 : 균유지 집단화 (재무과)

▷ 용평면 노동리 388-1번지 외 2필지 5,365㎡ 226,053천원(공시지가)

나. 건물 취득

① 기타(기부채납) : 최현숙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 진부면 하진부리 948번지 98㎡ 35,075천원(시가표준액)

3. 첨부자료

- 가.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부.
- 나. 사업계획서 2부.
-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2014년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3차)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 취득 (2건)			9,216	317,661			
소계 (5필지)			3,851	91,608			
1	전	진부면 하진부리 947	457	10,694	하반기	기부채납	최현숙
	대	하진부리 948	500	11,800			
	전	하진부리 948-1	346	8,096			
	전	하진부리 948-2	1,967	46,028			
	전	하진부리 1301-2	581	14,990			
소계 (3필지)			5,365	226,053			
2	잡	용평면 노동리 388-1	4,542	191,218	하반기	군유지 집단화	국방부
	잡	노동리 398	453	19,887			
	잡	노동리 392-1	370	14,948			
건물 취득 (1건)			98	35,075			
소계 (1필지)			98	35,075			
1	대	진부면 하진부리 948	98	35,075	하반기	기부채납	최현숙

< 사업계획 1 >

기부채납 재산 활용계획

- 기부자(최헌숙)는 지난 7월 초,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평창군에 기부채납 표명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진부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자를 선발하여 대부계약 체결 및 활용·관리

□ 개 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가리골길 79-10
- 재산내역 : 토지 5필지 3,851㎡, 단독주택 1동(2층)

- 토 지

(단위 : ㎡ / 원)

지목	지번	지적	소유자	공시지가	가감정
계	5필지	3,851		91,607,800	168,242,000
전	진부면 하진부리 947	457	최헌숙	10,693,800	19,194,000
대	" 948	500		11,800,000	27,500,000
전	" 948-1	346		8,096,400	14,532,000
전	" 948-2	1,967		46,027,800	82,614,000
전	" 1301-2	581		14,989,800	24,402,000

- 단독주택 1동(2층, '08년 신축), 벽돌구조 98㎡, 시가표준액 35백만원

※ 기부자 현황

- 성 명 : 최헌숙(56세 - 59.11.13일생)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가리골길 79-10
- 가족사항 : 夫(이병진)와 2녀 * 이병진은 계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위치도 및 사진대지 : 별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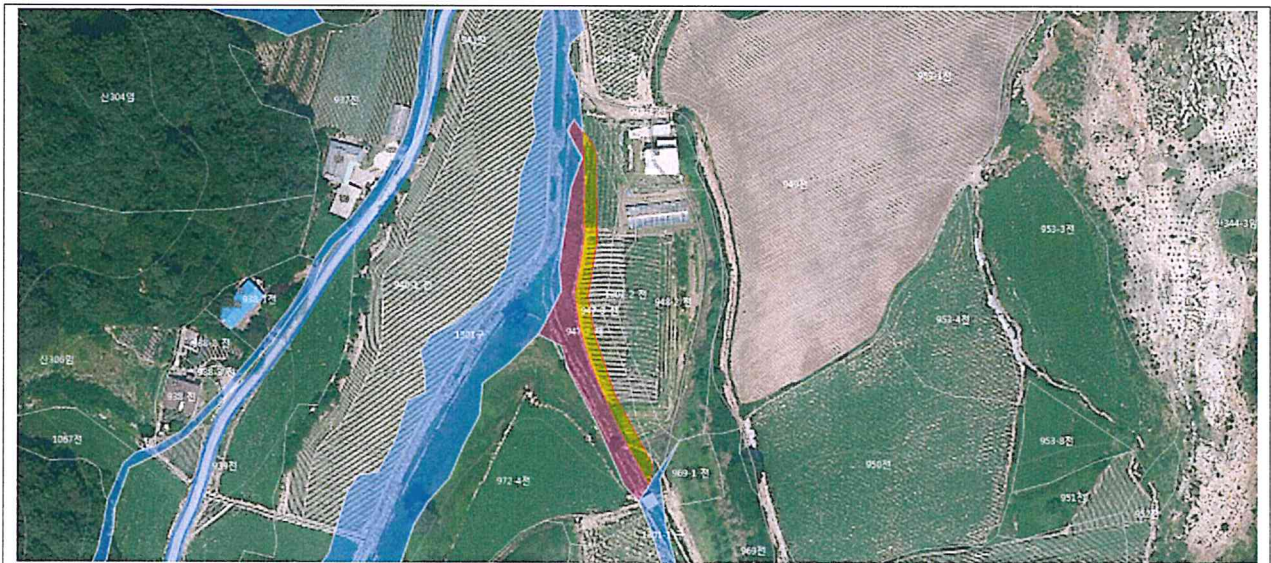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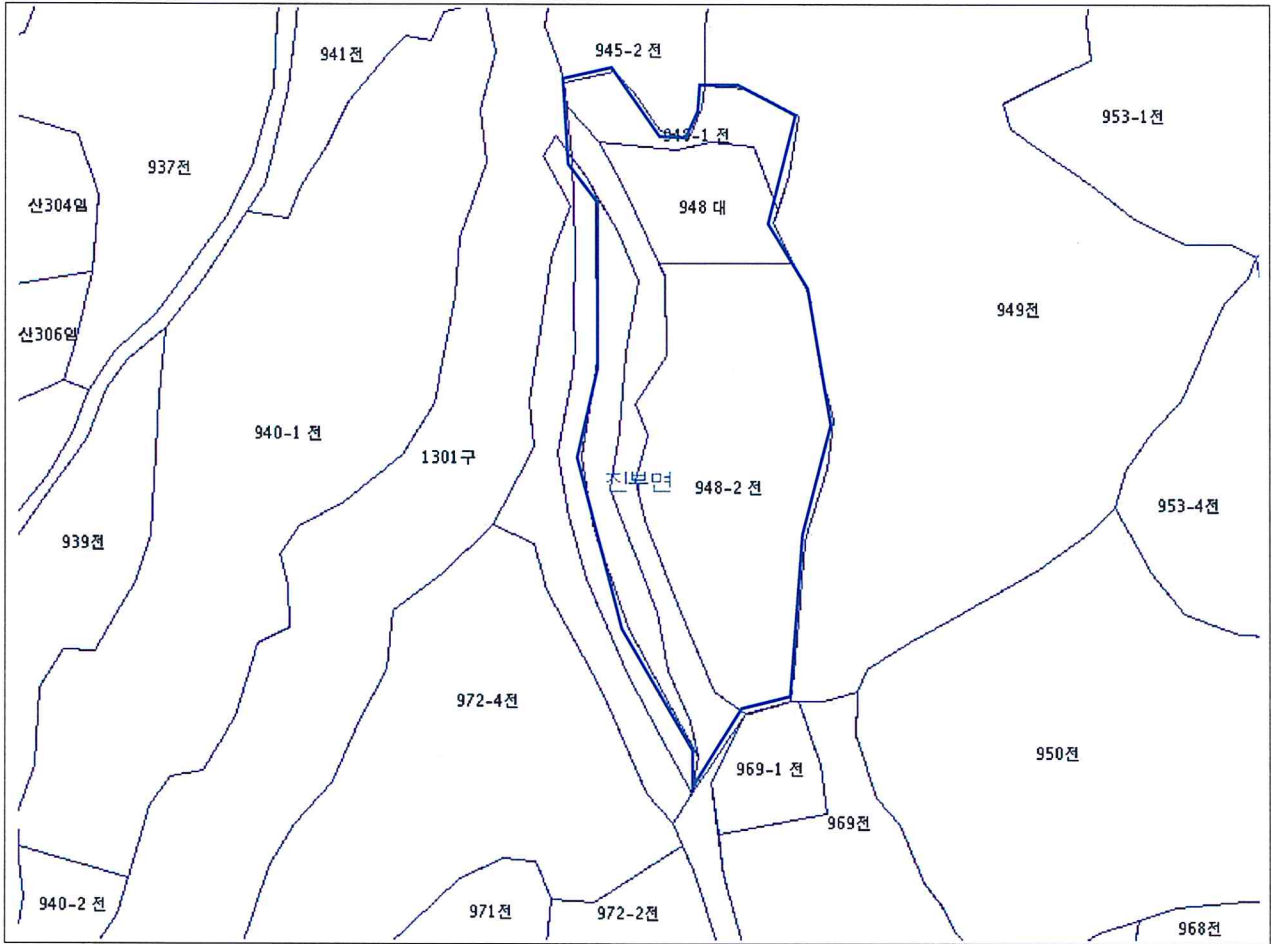
□ 추진상황

- 기부채납 부동산 현지 답사 2회 : 2014. 7. 18, 23.
- 기부채납 검토보고 : 2014. 7. 24(목)
- 기부채납 계약체결 : 2014. 7. 25(금)
- 기부채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2014. 8. 6(수)

□ 추진계획

- 건축물 내·외 집기 등 이전 : 2014. 08. 13(수)
- 건축물 보수 등 확인 - 필요시 군비 부담 보수 추진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 균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2014. 9월 중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진부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부계약
 - 계약기간 : 5년(갱신가능)
 - 대 부 료 : 연간 약 130만원(건물+대지+전)
 - ※ 공시지가(토지), 시가표준액(건물)의 1%
 - ※ 건물 및 대지에 한정된 대부 : 연간 약 47만원
- 대부계약 체결 및 입주 : 2014. 9월 중
-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 추가 가입 : 2014. 9월 중

□ 위치도 및 지적도



□ 사진대지



< 사업계획 2 >

군유지 집단화 추진계획

- 국방부에서는 용평면 노동리 소재 토지에 대하여 군인아파트 조성 등 자금 확보를 위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매각 추진
- 인근 군유지(3필지 9,689㎡) 활용도와 가치 제고를 위해 군유지 집단화 추진 ※ 민선6기 군정 읍면 방문 시 건의

□ 개 요

- 사업량 : 토지 3필지 5,365㎡, 공작물 2동(야외 교육장, 심정)

(단위 : ㎡ / 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대장가격	감정가	비고
			5,365	226,052,900	444,542,500	
토지	용평면 노동리 388-1	잡	4,542	191,218,200	386,070,000	계획관리
	용평면 노동리 389	잡	453	19,886,700	35,107,500	"
	용평면 노동리 392-1	잡	370	14,948,000	5,365,000	"
공작물	용평면 노동리 388-1		1식		15,000,000	야외교육장
	용평면 노동리 388-1		1식		3,000,000	심정

- 사업비 : 450,000천원 (군비)
- 사업기간 : 2014. 8 ~ 10월

□ 추진상황

- 민선6기 군정 읍면 방문 시 건의 : 2014. 7월
- 군유지 집단화 추진계획 수립 : 2014. 8. 19(화)
- 국유지 수의매각 요청 : 2014. 8. 20(수)

□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의회승인 : 2014. 9월

-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 반영 : 2014. 9월
- 국방부 소유 토지 취득 : 2014. 10월
 - 토지 및 공작물 매매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등 축탁등기 완료
- 인근 군유지 상 군부대 시설물 철거 협의 : 10월
 - 노동리 387-11, 시멘트 브럭조 567m²

□ 활용계획

- 단기적으로 등산로 편의시설 등 조성 전까지 인근 주민 및 법인 대부 추진
- 장기적으로 계방산 등산로 주차장으로 활용 또는 고속국도, 소하천 등 입지 여건에 따라 복합관광시설 등 민자유치 추진
 - 고속국도(속사 IC)에서 9km 20분 소요, 맑은 소하천

※ 지적도 및 부지 전경 [별첨1]

□ 지적도 및 부지 전경



< 국방부 토지 >



< 인근 공유지 >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제39조(교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 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